

본회 육계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 제시안

지난 6월 축산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 추진계획(안)이 발표됨에 따라 본회는 각 분야별 정책 제시안을 마련, 지난 8월 26일 수의과학회관 대강당에서 본회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육계분야 농업·농촌종합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본고는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승렬 박사, (주)하림 이종길 고문이 발표한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이다.

- 편집자주 -

<육계 계열화 육성 발전>

1. 현황 및 문제점

- 가. 육계의 약 70%가 계열화되어 생산·가공·유통되고 있음.
- 나. 과잉생산 등 가격변동이 심해 계열주체의 부담 가중
- 다.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속 시설 및 사업비 투자
- 라. 브랜드육 생산 및 고품질의 포장육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가중
- 마. 소비자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속적인 제품 개발 및 홍보
- 바.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의 분쟁이 상존
- 자. 자연재해발생시 보상한계가 모호하여 사육농가의 불만고조(평상시 병아리 폐사 책임은 농가에 귀속, 재해에 의한 폐사병아리 보상전액이 계열주체에 귀속)

2. 추진방향

- 가. 육계 계열화 육성 발전
- 나. 브랜드육 및 고품질닭고기 생산 공급을 위한 시설개선
 - 1) 브랜드육 및 포장육 생산을 위한 도계장 포장처리시설 및 포장비용 지원
 - 2) 사육농가 HACCP 제도 추진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자금 지원
- 다. 계열주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영자금 지원
- 라. 육계 가격안정 지지대책 등 대안 강구
- 마. 계열주체와 사육농가간의 관계를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개선

3. 추진계획

- 가. 육계계열화를 현재 70%에서 2008년까지 85%로 육성 발전
- 나. 고품질의 브랜드육 생산공급
 - 농가 HACCP 제도시행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자금 지원

- 다. 포장유통 의무화를 위한 도계장 포장처리 시설 설치
- 라. 계열주체 경영 안정자금 지원
- 마. 과잉축산물(닭고기)을 구매하여 사회 복지 사업에 활용
 - 수급 및 가격지지 효과로 육계산업(축산업) 안정
 -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 수행
 - 사회 복지예산 절감
- 바. 대한양계협회, 가금수급안정위원회와의 협력으로 가칭 “육계 계열화사업 분쟁 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연간 운영비 60,000천원)
- 사. 대한양계협회와의 협력으로 “육계 계열화 사업 표준계약서” 확정 보급(연구개발, 홍보, 인쇄, 보급비 : 60,000천원)
- 아. 사육 수수료를 결정시 가격진폭요인(연구개발, 교육 홍보비 : 60,000천원)
- 자. 자연재해발생시 보상원칙에 대한 논리 개발(연구개발비 30,000천원)

물 위생 안전성 종합대책)으로 2008년부터 국내 모든 닭고기를 포장유통하여야 함.

- 라. 소비자의 기호도가 부분육 및 절단된 포장육을 선호하는 소비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마. 브랜드육 생산유통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해 반드시 식육포장시설이 도계장내 설치되어야 함.

2. 개선방향

- 가. 도계장내 식육포장시설 설치
- 나. 식육포장시설 설치 자금 지원
- 다. 도계장 노후시설 개선자금 지원

3. 추진계획

- 가. 식육포장시설처리 및 노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1) 기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 2) 지원대상
 - 가동 중인 도계장 : 매년 10개소로 3년간 30개소
 - 지원액 : 도계장 1개소당 10억원 저리 장기융자(포장 냉각비 일부 보조)

<도계장내 식육포장처리시설 자금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가. 도계장에서 생산되는 닭고기는 대부분 미포장 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통닭 상태로만 포장 유통이 가능함.
- 나. 도계장은 대부분 식육포장처리시설이 미비하며 완비업체는 4개소뿐임.
- 다. 닭고기 포장유통 의무화 추진(농림부 축산

<닭고기 브랜드 육성 및 활성화 방안>

1. 현황

- 가. 닭고기는 대부분 신선육으로 유통되며 소비자가 브랜드를 확인할 수 없음.
- 나. 대형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일부에서 3~4개 브랜드가 표시된 포장육이 일부 유통됨.
- 다. 브랜드를 표시하고 판매하는 닭고기도 미

포장 상태에서는 이를 소비자가 분별할 수 없고 여러 도계장에서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어 브랜드 육성을 저해하고 있음.

라. 중간 유통단계에서 재포장되어 브랜드가 섞이는 사례가 있음.

2. 문제점

가. 브랜드를 표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장된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다른 상품과 비교 평가가 필요하나 포장유통이 의무화 안된 상태에서 브랜드육만 포장시 냉각, 포장, 및 위생관리 비용이 추가되어 가격인상이 불가피함.

나. 미포장육을 판매시 일반제품을 혼재하여 우수 브랜드를 악용함.

다. 소비자들로부터 브랜드육에 대한 홍보 및 비교 평가 등 품질에 대한 차별화가 안된 상황에서 가격만 인상시 경쟁력이 약화됨.

라. 유통 소매단계에서 위생시설이 열악하거나 취약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3. 개선방향

가. 품질향상과 소비자에 대한 품질보증 차원에서 브랜드 닭고기는 반드시 포장하여 유통함.

나. 포장유통을 위해 도계장에 식육포장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원

다.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 닭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브랜드 정착시까지 포장비 등 비용지원

라. 백화점 등 신유통업체에 우선 시행하고 2008년 포장유통의무화 시점에 완전 시행

4. 추진계획

가. 백화점 등 신 유통업체에 100% 브랜드육 공급('05)

1) 포장비 등 브랜드육 생산 추가비용 보조

2) 신유통업체에 브랜드육 홍보 및 협조 요청

3) 브랜드 홍보강화 및 인증제도 도입

나. 고품질 닭고기 생산을 위해 생산농가 HACCP 제도 도입

1) 생산농가 시설환경개선자금 지원

2) 시범농가 지정 및 교육 홍보 강화

5. 개선효과

- 브랜드가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불신 해소

- 브랜드 육성 발전으로 경쟁력 제고

- 고품질의 안전한 닭고기 생산 공급

<수입닭고기 관리 강화>

1. 음식점에 닭고기 원산지 표시 추진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농수축산물의 전 유통과정에서 수입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음식점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음. 최종 소비단계인 음식점에서는 원산지표시 없이 닭고기를 조리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치킨 외식업체 등은 닭고기만을 가공(조리) 판매하는 업체임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음.

○ 2004년 6월 국회에서 발의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의 대상 품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2년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8.0kg으로 전체 육류 소비량(33.5kg : 돼지고기 17.0kg, 쇠고기 8.5kg)의 24%를 차지함(농림부). 전체 육류제품이 음식점원산지 표시제의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어야 함.

-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부재로 인하여 소비자는 닭고기 품질과 가격에 대한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생산자는 고품질에 대한 정당한 가격 수취가 불가능함. 또한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효율적인 추적이 어려운 실정임.
- 음식점(치킨 외식업체, 닭갈비 등)에서 판매하는 모든 닭고기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원산지 표시가 없으므로 수입육을 국산 닭고기로 둔갑할 경우 단속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나. 추진방향과 계획

-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혼동 방지, 영업자의 부당이익 및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닭고기 판매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표 1〉 수입산 닭고기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소비량	260	283	327	350	384
국내산	247	237	260	265	291
수입산	13	46	67	85	93
시장점유율	5%	16%	21%	24%	24%

※ 자료 : 농림부

- 닭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주 대상은 치킨 외식업체이므로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시 포장지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함.
- 음식점(닭갈비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메뉴판에 판매할 닭고기의 원산지를 기재함.
예) 닭갈비(국내산) 1인분 ○○○원
 닭갈비(수입산) 1인분 ○○○원
-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단체 협조가 필요함.
 -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비자 단체와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04)
 - 음식점 닭고기 원산지 표시 이행 촉구 (농림부, 보건복지부)
 - 관련법령(식품위생법령) 등 제정 촉구 (축단협과 공조)
 - 국내산 닭고기 취급업체 적극 홍보 등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단속할 상설 Monitor 발족
 - 농림부 산하단체(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원산지표시 우선실시

다.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추진 경과(사례)

- 1996. 7. 26 : 보건복지부에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실시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 1999. 6. 7 : 다이옥신 파동 관련대책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 발표

-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국내 유통된 위해 수입축산물로부터 소비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보완 요구

- 1999. 6~12 : 보건복지부에 음식점 원산지 입법 요청 및 실무협의
- 2000. 3. 11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쇠고기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시행시기를 2001. 1. 1로 함.
- 2000. 3. 20 : 외교통상부에서 통상문제 야기 우려를 이유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추진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
- 2004. 6. :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 발의라. 기대효과
 - 음식점에서의 닭고기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으로 생산자는 적정 가격을 수취하고 소비자는 품질에 따른 적절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도매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음.

2. 닭고기 수입 통계자료 실시간 공개

가.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 기준(농림부)으로 닭고기 총소비량의 24%를 차지하는 수입닭고기의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닭고기 수급을 전망하고 수급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
- 닭고기 수입에 대한 통계자료가 국내 수입 후 1개월 또는 2개월 후에 공개되어 생산

주기가 짧은 닭고기의 수급조절이 어렵고, 수입닭고기의 국내 유통 상황이 불투명함.

나. 개선방향

- 닭고기 수입 검역실적 자료의 신속·정확한 공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수입업체, 수입국가, 부위, 중량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
 - 매월 10일 단위로 공개
 - 수입실적 자료에 따라 원산지 단속 감시 활동 강화

다. 추진계획

- 닭고기 수입실적 세부자료 공개 건의(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수입업체별 국가, 부위 중량 등을 표시
 - 매월 10일 단위로 자료 공개
 - 수입통계자료 실시간 공표를 위한 전산장비 및 인력의 보강
 -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반 운영 강화(정보제공 및 자료확인 등)
- 라. 기대 효과
- 닭고기 수입량의 신속·정확한 공표로 닭고기의 수급전망에 활용하여 과잉생산을 미연 방지하고자 함.

<잉여 축산물(닭고기) 사회복지사업 추진>

가. 현황 및 문제점

- 매년 과잉 생산이나 소비둔화 등으로 잉여 축산물 발생
- 잉여 산물 발생으로 가격 폭락 등 안정적

생산기반 위축

- 계열주체 부담가중 및 경영압박으로 생산 농가 피해 발생
- 정부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
 - 〈예: 미국의 축산물 구매사업〉
 - 미국 농림성의 구매사업(Procurement)을 통하여 가금육과 계란 프로그램, 과일 및 채소 프로그램, 식육 및 생선, 종자 프로그램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생산 집중 시기나 소비가 정체되는 시기에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 미 농업법 32조에 의하여 농림성이 구매사업 실시를 규정
 - 1935년부터 경제 공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고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시작한 상품 구매사업
 - 지금까지 지속되어 잉여농산물을 처분해줌으로써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방지
 - 매년 일정 예산(관세수입의 30%)을 농림성에 배정하도록 법 32조에 명시하여 2001년에는 10억불(1조 2000억원) 배정
 - 미농무성 농산물유통국(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에서 학교급식(School Lunch Program)을 보조하여 청소년에게 영양 보급 노년층 급여사업, 공공 대량급식사업을 보조하

여 영양을 공급함.

- 또한 미농무성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의 사업으로 구매한 가금육 등 농산물을 노인, 인디안, 극빈가정, 집 없는 사람들(Homeless)에게 무상 분배
- 2003년 가금 산물에 대한 미국정부의 구매사업 계획은 닭고기 89.6백만달러, 칠면조고기 63.8백만달러, 계란 10.3백만달러, 폐계 31.7백만달러 합계 195.4백만달러(약 2,340억원)에 이룸.
 - 2003년 미국 닭고기시장 규모는 도매가격기준으로 300억달러(약 36조 원)임.

나. 추진방향

- 정부(농림부)가 잉여 축산물을 구매하여 사회 복지사업으로 활용
 - 재원은 축산물 수입 관세를 원칙으로 함.
 - 관세 사용을 위한 제반 법령 등 제도 정비시까지 농업·농촌발전 대책 자금으로 운영
- 다. 추진계획
- 잉여 축산물 구매사업 추진 확정('05)
 - 예산확보 및 관련 제도 법령 정비('05)
 - 관세 및 사회복지사업 주관부서와 협의 조정
 - 잉여 축산물 구매전담 부서 결정
 - 사회 복지사업 관련부서와 협의 구매량 조정
 - 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은 잉여 산물 발생상황에 따라 조정

라. 기대 효과

-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으로 육계산업 발전
- 효율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예산 절감
- 학교급식 등 정부지원 급식소에 국내산 축산물 공급으로 국민 보건 및 영양 향상
- 가격 지지효과로 농가 소득 증대

<육계농가 HACCP 제도 도입>

1. 현황

- 가. 도계장과 일부 가공장 위주로 HACCP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나. 농가 등 사육단계 HACCP 제도 미실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도계육 생산을 위해 사육단계에서의 HACCP 제도 도입 필요성 대두

2. 문제점

- 가. 사육환경 시설 열악
 - 보온 덮개형 간이 계사가 전체육계농가의 40%로서 시설이 열악하나 시설과잉 투자시 경영수지 악화로 시설투자 기피
- 나. 사육단계의 위생 및 안전관리 미흡
 - 병원성 미생물 오염 및 항생제 등에 의한 안전관리 장치 미흡
 - 안전사료 확보, 사육환경시설 개선
- 다. 차단 방역 등 미생물 오염 방지시설 미흡
 - 농가출입 차량 및 출입자 소독시설
 - 분변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 라. 사육관련 자체위생관리기준 등 사육지침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지침 등

3. 개선방향

- 가. 육계농가에 HACCP 제도 도입 시행
 -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닭고기 생산
- 나. 육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자금 지원
 - 농가 경영수지 개선
 - 관리인력 감소 및 사양관리 향상
 - 시설자동화 및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4. 추진계획

- 가. 사육단계의 HACCP 지침 제정 및 관련 법령 정비('05년)
 - 1) 위해요소 및 중점관리점 등 사육단계 HACCP 지침 개발
 - 2) 구체적인 SSOP 관리방안
 - 3) 위해요소 제거방법 및 검증방법
 - 4) HACCP 제도 도입에 따른 농가 지정방법 및 사후관리 등
- 나. 시범농가 지정('06년)
 - 1) 지정대상 농가
 - 시설환경이 양호한 농가
 - 사육규모 10만수 이상 농가
 - 우수 종계장
- 다. 사육환경개선자금 지원
 - 1)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점차적으로 지원
 - 2) 지원내역 : 사육환경개선 관련(총 9,125억원)
 - 가) 축사시설 : 8,900억원(50% 보조, 50% 용자)
 - 육계농가 : 1,000농가×6.5억원 = 6,500억원 (농가당 6.5억원 = 1,000

평(7만수 기준)×65만원(평당)
 - 종계농가 : 250농가×9.6억원 =
 2,400억원 (농가당 9.6억원 = 1,200
 평(2만수 기준)×80만원(평당))
 나) 차단방역 소독시설 : 2,250농가×
 1,000만원 = 225억원

<ND관련 질병방역대책>

1. 현황

- 가. 닭뉴캐슬병(ND)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전염병으로서 매년 전국적으로 40~80여 건씩 발생
- 나. ND 예방백신 공급 : 10억수분 40억원/년, 혈청검사 지원 등 방역추진
- 다. “뉴캐슬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 2003. 7. 21) 제정·시행

2. 문제점

- 가. 기존에 ND발생의 경우 신고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오히려 신고하지 않도록 분위기 형성
- 나.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 계열업체를 제외한 일반농가의 경우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발생
- 라. 현재 ND에 대해서만 백신이 무상공급되고 있으며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발생하고 있는 IB와 IBD에 대해서는 지원 없음.

3. 개선방향

- 가. 계열업체 및 사육농가 뉴캐슬병 예방접종

100% 실시

- 나. 철저한 차단방역 실시
- 다. 살처분 보상 추진
- 라. 상호 연관성을 가진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질병발생 최소화
: ND외에 IB와 IBD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백신 무상 지원
- 마. 사육농가 HACCP와 연계하여 사육환경 개선
- 바. 일반농가에 대한 예방접종 강화 지도

4. 추진계획

- 가. 살처분 보상
 - 1) 계열업체의 경우 이미 100%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일반사육농가까지 포함한 전체 접종률이 80%를 상회하므로 백신지원 외에 살처분 보상 추진
 - 2)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살처분보상 대상에 ND 포함 추진
 - 3) 보상기준 마련 : 조류인플루엔자에 준하는 보상 필요
- 나. 3종의 예방 백신 동시 지원
 - 1) 권장 백신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2) 3종의 혼합 및 단독백신 공급 : 2005년부터 연 100억원 지원
: ND(2회), IB(2회), IBD 각각 4원씩 총 20원, 연간 5억수 적용 연간 100억원 소요
- 다.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행정처분 강화
 - 1) 뉴캐슬병 혈청검사사업 지속 실시
 - 2) 예방접종여부 확인검사 철저 및 결과에 따른 과태료부과 철저 C